

현행법상의 環境汚染에 대한 企業의 責任

조 은 래*

<목 차>

- I. 序 說
- II. 環境行政法上の 責任
- III. 環境汚染에 대한 淨化費用責任
- IV. 環境汚染被害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 V. 結 語

I. 序 說

현대산업사회에서의 기업은 하나의 사회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경제의 생산주체로서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의 생산활동이 국민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고 다양하다. 현대 기업의 생산물이 대량생산의 원리와 공장의 기계설비의 대형화, 고도화되어 여러 가지의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1970년대의 고도의 경제개발정책은 눈부신 국가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업화와 산업화, 도시화와 인구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 국토가 환경오염으로 훼손되거나 파괴되는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선임연구원.

악영향을 가져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기업의 생산활동에 있어서 배출되는 각종의 오염물질은 대기, 수질, 토양 및 지하수, 해양 등의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와 같이 산업활동의 주체로서의 기업은 경제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는 한편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에도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기업에 대하여 각종의 환경규제법과 단속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은 생산활동에 있어서 수많은 환경관련법들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그 위반시에는 각종의 행정적 재제와 법적인 책임을 지게된다. 그러므로 기업은 공업화의 주된 담당자인 산업주체로서 환경문제를 사실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예컨대 기업 내에 환경전문가를 두어 환경관련의 기술적인 부문 및 환경관계법령의 준수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생산활동에 있어서 환경오염배출을 극소화시키는 등의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영세한 기업이나 환경의식이 결여된 기업 등에서는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서 각종의 환경법상에 열거하고 있는 기업의 책무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 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무거운 벌칙규정의 내용과 환경오염분쟁상의 배상책임의 범위 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의하여 환경오염예방과 방지에 대한 대책을 좀더 원활히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각종의 환경관계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의 책임규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방안을 적절히 수립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環境行政法上的의 責任

산업시설을 이용한 생산활동에 있어서 기업은 각종의 환경행정법상의 규제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환경관계법령상의 義務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기업은 일정한 刑法上¹⁾ 또는 行政上의 책임을 지게 된다.²⁾

이하에서는 環境政策基本法, 大氣 및 水質環境保全法, 土壤環境保全法, 廢棄物管理法 등을 중심으로 관련법규상의 징역 또는 벌금형의 벌칙규정에 한정(벌금 및 과태료의 벌칙규정은 제외함)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기업의 책임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環境政策基本法上的의 責任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을 이용한 경제개발에 대응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환경정책을 제시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헌법상의 권리인 환경권, 즉 국민의 쾌적한 환경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따라서 이 법은 헌법상의 環境權과 環境保全義務를 구현하기 위한 각종의 개별환경의 대책법의 기본지침을 명백히 해줌으로써, 헌법과 環境對策法을 연계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이 법은 규제법이나 執行法이 아닌 政策法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 1) 환경오염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으로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즉 환경오염물질의 불법배출, 환경보호지역에서의 오염행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포획, 폐기물의 불법처리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가중처벌의 책임을 진다.
- 2) 환경오염의 규제법으로서의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해양오염방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汚糞法], 수도법, 하수도법,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어항법, 지하수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법들 외에도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의 관련법들이 있다.

각종의 개별적 환경관계법들에 대한 근본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환경대책법의 기본내용에 관하여는 물론, 환경에 관계되는 각종의 국가정책에 대하여도 구속력을 가진다. 그리고 이 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절차법 내지는 규제적 내용의 규정을 포함할 수도 있으며, 이것은 정책법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³⁾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權利·義務와 국가의 義務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기업 및 사업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事業者로서의 環境上의 義務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環境汚染 및 環境毀損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環境保全施策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義務를 진다(제5조).

“환경”이라 함은 自然環境과 生活環境을 말한다. “자연환경”이라 함은 地下·地表(海洋을 포함한다) 및 地上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日照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그리고 “環境汚染”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環境毀損”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損傷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環境保全”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3) 전병성, “우리나라 환경법의 발전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 환경법연구 제14권, 1992, 75면 이하 참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維持·造成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제3조).

(2) 汚染原因者 責任原則과 環境汚染의 事前豫防義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環境汚染 또는 環境毀損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救濟에 소요되는 費用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제7조). 이것은 오염발생의 원인이자 오염정화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화비용책임과 오염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배상을 無過失責任으로 진다는 것이다. 정화책임과 그 비용 및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製品의 製造·販賣·流通 및 廢棄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原料를 사용하고 工程을 개선하며,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の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源泉의으로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의 2 제2항). 이것은 기업의 환경오염에 대한 事前豫防的 조치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3) 環境汚染의 被害에 대한 無過失責任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環境汚染 또는 環境毀損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賠償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장 등이 2개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 등에 의하여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被害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連帶하여 賠償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 제2항). 이 책임에 대한 내용은 후술하는 민사상의 책임에서 논하기로 한다.

2. 大氣 및 水質環境保全法上的 責任

(1) 大氣汚染과 水質汚染

大氣汚染(air pollution)이란 산업과 교통의 발전과 더불어 대기 중에

廢가스, 먼지, 산화질소, 아황산가스 등의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인체, 동식물, 기타의 물질에 악영향을 주는 환경오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오염의 정의에 대하여는 현재 그 오염물질의 내용, 메커니즘, 영향 등 아직도 불명확한 점이 많으므로 이를 정확히 정의한다는 것은 곤란한 것이다.⁴⁾ 그러므로 大氣環境保全法(이하에서는 “대기법”이라 한다)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 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간접적으로 대기오염을 定義하고 있다(동법 제2조 1).⁵⁾

水質汚染이란 생활하수, 산업활동에 의한 산업폐수, 농촌의 농·축산폐수 등이 정화되지 않고 하천이나 호수로 유입되어 물을 오염시켜 각종 용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생물의 서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정도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을 말한다.⁶⁾ 수질오염의 가장 큰 문제는 오염

-
- 4) 대기오염물질은 연료사용의 대규모화, 산업시설에서의 각종의 오염물질,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오염배출량, 또 배출된 오염물질들이 광화학반응의 작용과 비나 안개와 결합하여 산성비 혹은 산성안개를 만들어 2차오염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들은 아황산가스, 浮遊분진,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광화학 산화제(오존(O₃), 알데히드, PAN(peroxyacetyl nitrate), PBN(peroxybenzoyl nitrate)을 비롯한 각종 화합물 등), 炭化수소(HC: hydrocarbons) 등이 있다. 기타의 것으로는 불소, 납, 석면, 이 밖에도 업종에 따라서 산과 알칼리, 중금속, 휘발성 탄화수소와 각종 유독성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플라스틱류가 탈 때에는 염산과 각종 유독성 유기염소 화합물이 발생한다.
- 5) 한편 우생학적 견지에서는 미국의 公衆衛生局이 대기오염이란 「인위적 또는 자연에 의하여 발생한 물질이 사람의 쾌적, 안전, 건강 등을 해치거나 사람이 소유하는 재산과 그가 만족할 수 있는 사용을 방해함에 충분한 농도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호외의 대기 중에 인공적으로 특히 오염물질의 농도나 지속시간이 하나의 지역 주민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거나 넓은 지역에 걸쳐 공중위생상의 위해나 인간, 동식물의 생활을 방해하게 된 상태를 말한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정의 역시 추상적인 것으로 해석상 의문이 없지 않다. 요컨대 대기오염이란 인간생활이나 생산활동의 결과, 배출 또는 산출된 오염물질이 인간이나 동식물 및 기타의 물질에 피해를 주는 정도의 농도로 대기 중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오염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홍천용, “大氣汚染被害의 私法的 救濟”, 경남법학(경남대법학연구소), 제12집, 1996, 15-16면.
- 6) 생활하수는 사람이 생활하면서 발생시키는 생활잡수와 분뇨로 구분할 수 있다.

물질들의 양이 과다하여 하천이나 호수, 바다의 자정능력을 마비시키며, 또한 오염된 물을 잘못 마시면 인체에 각종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다. 水質環境保全法(이하에서는 “수질법”이라고 한다)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危害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및 稼動開始 등의 申告에 관한 義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許可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⁷⁾ 또한 許

분뇨의 배출량은 1인당 1일 평균 1.2ℓ 정도이며 10분의 1정도가 고형분이다. 부엌, 목욕탕, 청소, 세탁 등에 사용한 물로 음식찌꺼기, 때, 세제, 먼지 등으로 오염된 것을 생활폐수라 하는데 하루 평균 1인당 약 400ℓ ~500ℓ 정도가 된다. 한국환경교육협회, <http://www.greenvi.or.kr/main1/info/classrm/class3-07.htm>.

7)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을 제외한다(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법 제10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등의 변경에 의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이 발생하는 배출시설(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등이다. 또한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외의 경우, 2. 제1항 각호의 경우로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다만,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밖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배출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 배출되는 폐수를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

可를 받은 자가 許可받은 사항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變更許可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대기법 및 수질법 제10조 제1-2항).⁸⁾ 또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⁹⁾ 및 변경의 경우¹⁰⁾에 한한다)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등이다.

- 8) 대기환경보전법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 증설한 배출시설의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2.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등이다. 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로서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1.폐수배출량이 허가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 2.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제3항) 등이다.
- 9)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변경”이라 함은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이상의 증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7조).
- 10) 1. 폐수배출량이 신고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되는 경우, 2.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5조) 등이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環境部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環境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대기법 및 수질법 제14조 제1항).

한편 環境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지정호소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環境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大統領승으로 정하고, 環境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수질법 제10조 제6, 7항).

(3)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運營에 관한 事項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사업자(共同防止施設의 代表者를 포함)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배출시설가동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空氣調節裝置·가지排出管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火災·爆發등 安全事故豫防을 위하여 다른 法令에서 정한 시설로서 排出施設設置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腐蝕·磨耗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漏出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附帶되는 機械·器具類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5.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稼動하지 아니하여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제15조 제1항).

또한 기업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自家測定하거나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이를 기록, 보관해야 한다(제15조 제2항).

한편 수질환경보전법상의 사업자(共同防止施設의 代表者를 포함)는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정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排出許容基準이 초과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汚染度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水質汚染防止公法上 稀釋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稼動하지 아니하여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제15조 제1항).

(4) 操業停止命令 등

대기환경보전법상의 환경부장관은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排出許容基準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命할 수 있다. 따라서 環境부장관은 이러한 改善命을 받은 자가 改善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檢査結果, 排出許容基準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操業停止를 命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또한 環境부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의 危害와 環境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環境部令¹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操業時間의 제한·操業停止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17조 제2항).

수질환경보전법상의 環境부장관은 동법 제16조의 규정¹²⁾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檢査결과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17조).

(5) 許可의 取消 등

環境부장관은 사업자가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變更許可를 받았거나 申告·變更申告를 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즉 이 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배출시설의 설치

- 11) 시·도지사 등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오염물질 등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연료의 대체,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위해와 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6조).
- 12) 環境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閉鎖를 명하거나 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操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대기법 및 수질법 제20조).

(6) 大氣環境保全法上的 責務

1) 製作車의 排出許容基準 등과 製作車에 대한 認證

자동차를 제작(輸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自動車製作者"라 한다)는 당해 자동차(이하 "製作車"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大統領令이 정하는 오염물질에 한한다. 이하 "배출가스"¹³⁾라 한다)이 環境部令이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製作車排出許容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또 제작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 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製作車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제31조 제1항, 제3항).

그리고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제작차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¹⁴⁾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
- 13) 배출가스는 첫째, 휘발유·알콜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알데히드, 둘째,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일산화탄소, 배기판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매연, 입자상물질 등을 말한다.
- 14) 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①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와 소방용 자동차, 2. 주한 외국공관이나 외교관 기타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부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4. 수출용 자동차 또는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5. 여행자동차가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반입하는 자동차, 6. 자동차 제작자 및 자동차관련 연구기관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등 주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 7. 전기·태양광 또는 수소 등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가 전혀 배출되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제32조 제1항). 그리고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그 인증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變更認證을 받아야 한다(제32조 제2항).

2) 測定器機의 附着等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測定器機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5조의2 제1항). 또 이 규정에 의하여 測定器機를 부착한 사업자는 測定器機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 가동시에 측정기기를 故意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腐蝕·磨耗·故障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漏落시키거나 허위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제15조의2 제3항)

3) 揮發性 有機化合物質의 規制

特別對策地域 또는 大氣環境規制地域안에서 揮發性 有機化合物質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의

지 아니하는 자동차, 8.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②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대표 선수용 및 훈련용 자동차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자동차, 4. 외교관 또는 주한 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5. 항공기 지상조업용 자동차, 6.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7. 국제협약등에 의하여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8. 기타 環境부장관이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1조 제1-2항).

경우 大統領令¹⁵⁾이 정하는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제28조의2 제1항), 위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제28조의2 제2항). 또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앞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28조의2 제4항).

4) 缺陷確認檢査 및 缺陷是正에 대한 命令

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의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檢査(이하 “缺陷確認檢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제34조 제1항). 이에 환경부장관은 結算확인검사의 결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車種에 대하여 缺陷是正을 명할 수 있다(제34조 제4항 본문). 또한 缺陷是正命令을 받거나 스스로 자동차의 結算을 시정하고자 하는 자동차제작자는 環境部令¹⁶⁾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동차의 缺

-
- 15)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규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라 함은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기타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를 위한 정제등 제조시설·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2. 정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2의2. 주유소의 저장시설, 3. 세탁시설, 4.기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9조 제1-2항).
- 16) 환경부장관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 및 본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로 판정하여야 한다. 1. 예비검사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된 결과 검

陷是正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34조 제5항). 이에 환경부장관은 결함시정결과를 보고 받아 검토한 결과 缺陷是正計劃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缺陷是正命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缺陷是正을 命하여야 한다(제34조 제6항).

5) 自動車 燃料 또는 添加劑의 規制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環境部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한다(제41조 제1항). 또 환경부장관은 연료 또는 첨가제로 인하여 환경상의 危害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현저하게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環境部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제41조 제2항).

(7) 水質環境保全法上の 責務

1) 終末處理施設の 運營、管理 등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로 유입된 오염물질을 정당한

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동일한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중 2대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동일한 항목에서 3대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본 검사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10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된 항목과 동일한 항목에서 검사차량 10대중 3대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10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동일항목에서 6대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사유없이 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종말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제26조의2 제1항).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이 때 환경부장관은 종말처리시설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26조의2 제2항-3항).

2) 排出 등의 禁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油類"라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漏出·流出시키거나 버리는 행위¹⁷⁾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死體,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汚泥를 버리는 행위

3.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17) 이에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공공수역에 다량의 土砂를 유출시키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河川·湖沼를 현저히 오염시킨 행위

그리고 위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公共水域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물질을 제거하는 등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한편 시·도지사는 행위자 등이 위의 방제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자 등에게 방제조치의 履行을 명할 수 있다(제29조 제1항-3항).

3) 上水源의 水質保全을 위한 通行制限

전북, 추락등 사고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水邊區域, 상수원에 증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環境部令이 정하는 지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지역중에서 통행할 수 없는 도로·구간 및 자동차 등 필요한 사항은 環境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環境部令으로 정¹⁸⁾하는 규정에 의하여 環境부령으로 정한 도로·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제29조의3 제1항).

18) 1. 특정수질유해물질, 2.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액체상태의 폐기물 및 環境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3. 유류,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5.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 및 원제, 6. 원자력법 제2조 제6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군용자동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간의 인접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주민이 농약을 운반하는 자동차와 통행제한 구간의 시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통행증을 앞쪽 유리에 붙인 자동차를 제외한다(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8조의2 제3항).

4) 기타 水質汚染源의 設置申告 등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제30조의2 제1항).¹⁹⁾

환경부장관은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위의 改善命令에 위반한 때에는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당해 기타 수질오염원의 폐소를 명할 수 있다(제30조의2 제4항). 또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使用中止를 命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소를 명하여야 한다(제21조).

5) 公共施設의 設置、管理等

환경부장관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제32조 제4항).

6) 改善命令 등

시·도지사는 湖沼水質保全區域안에서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관리대상시설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는 6

19) 또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環境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環境부장관은 위의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리대상시설 또는 오염물질처리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위의 명령을 받은 관리대상시설의 운영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사용중지 등 指定湖沼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38조의3 제2-3항).

7) 낚시행위의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湖沼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²⁰⁾이 정하는바에 따라 낚시금지 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제38조의4 제1항).

8) 廢水處理業의 登錄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環境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제43조 제1항).

(8) 罰則 및 兩罰規定

가. 大氣環境保全法상의 罰則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제1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

20)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8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호소의 이용목적 2. 오염원 현황 3. 수질오염도 4.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현황 및 처리여건 5. 호소의 연도별 낚시인구 현황 6. 서식 어류의 종류·양 등 수중생태계 현황 7.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環境부장관이 海陽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

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제1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부착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15조의2 제3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2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4조 제4항 본문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합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3)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제15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한 자,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에 위반하여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6조).

나. 水質環境保全法上の 罰則은 다음과 같다.

1) 제1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제10조 제6항 및 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

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20조[허가의 취소등]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또는 폐소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2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킨 자,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뇨·축산폐수 등을 버린 자,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제3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제30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폐소명령을 위반한 자,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38조의4[წყ시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წყ금지구역 안에서წყ시행위를 한 자,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을 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상의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상의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4. 土壤環境保全法上の 責任

(1) 特定土壤汚染誘發施設の 申告 및 設置者에 대한 命令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내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申告한 내용을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 다)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제11조 제1항).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設置者(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土壤汚染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제11조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토양오염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당해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 이내가 되도록 누출검사의 실시, 오염범위의 파악,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土壤汚染의 정도가 우려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제12조 제3항).

(2) 土壤汚染防止措置命令

시·도지사는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유발시설의 改善 또는 移轉,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오염된 토양의 정화 등의 조치를 실시하거나 오염원인자에게 그 조

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15조 제3항).

(3) 汚染土壤改善事業

시·도지사는 汚染土壤改善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汚染原因者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을 감리자로 지정하여 오염토양개선사업을 감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제19조 제1항).

(4) 行爲制限

누구든지 대책지역안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特定水質有害物質,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 法律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汚水·糞尿 또는 畜産廢水를 土壤에 버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또한 누구든지 대책지역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도지사는 위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土壤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 또는 시설의 설치자에게 土壤汚染物質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등을 명할 수 있다(제21조 제1-3항).

(5) 報告 및 檢査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또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26조의2 제1-2항).

(6) 罰則 및 兩罰規定

1)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實施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實施命令을 받고 同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汚染土壤改善事業을 실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土壤汚染物質의 제거 또는 施設의 撤去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1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對策地域안에서 시설을 설치한 자,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종업원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토양환경보전법상의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과한다.

5. 廢棄物管理法上の 責任

(1) 廢棄物の 投棄禁止와 處理基準 등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 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 또한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大統領令²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제12조).

(2) 事業場廢棄物排出者の 義務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또 생산공정에 있어서는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²²⁾는 사업장폐

2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할 것,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것.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22)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함은 지정폐기물외의 사업장폐기물[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1.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의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

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環境部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제24조제1, 2항).

(3) 事業場廢棄物의 處理, 基本的 處理證明 및 證明書類의 保存 등

1) 事業場廢棄物의 處理: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海洋汚染防止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委託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제25조제1항). 그리고 環境部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²³⁾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인계서를 시·도지사

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4.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를 제외한다) 등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23)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과 폐지 및 고철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제외한다. 1. 시행령 제2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폐기물,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오니는 월평균 1톤이상, 그 밖의 폐기물은 월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오니, 나. 광재, 다. 분진, 라.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이하 "폐사"라 한다), 마. 폐내화물 및 재벌 구이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이하 "도자기조각"이라 한다), 바. 조각재, 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아. 폐촉매, 자.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5조제4항).

2) 基本的 處理證明: 한편, 지정폐기물(환경부령이 정하는 양²⁴⁾이상의 것에 한한다)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²⁵⁾에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수집·운반하는 자가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2.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이하 "처리자"라 한다)에게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의 수탁확인서(제25조의2제1항).

24)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이라 함은 배출되는 폐기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 1.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 각각 월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평균 100킬로그램, 2.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폐락카 또는 폐석면 : 각각 월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평균 200킬로그램, 3. 오니 : 월평균 500킬로그램,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5. 폐유독물, 6. 감염성폐기물, 7. 기타 지정폐기물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25)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 즉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동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세탁업을 하는 자,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쇄소를 경영하는 자,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등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또 배출자, 지정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이하 "운반자"라 한다) 또는 처리자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지정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처리자는 그 폐기물인계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²⁶⁾에는 폐기물인계서에 갈음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제25조의2제2항).

위의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검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環境部令²⁷⁾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인계 또는 처리하기전에 폐기물인계서에 환경부장관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25조의4).

3) 處理證明書類의 保存: 배출자·운반자 또는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최종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2. 폐기물정산서, 3. 제25조의8제2항의 규

- 26)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평균 100킬로그램 미만 또는 합계 월평균 200킬로그램 미만 배출하는 경우, 2.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폐락카 또는 폐석면을 각각 월평균 200킬로그램 미만 또는 합계 월평균 400킬로그램 미만 배출하는 경우, 3. 오니를 월평균 1톤 미만 배출하는 경우, 4.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의 기관에서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5.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4호의2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6.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회수·처리비용 예치대상인 제품·용기에 해당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7.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
- 27) 폐기물인계서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인계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계 또는 처리전까지 검인을 받아야 한다. 1. 폐기물의 배출자 또는 운반자 : 폐기물의 인계 3일전까지, 2. 폐기물의 처리자 : 폐기물의 처리 3일전까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4).

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로 보는 전산기록,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형 대장(제25조의9제1항). 또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자(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재내용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록형 대장에 기록하고, 전년도의 목록형 대장을 2월말까지 環境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5조의9제2항).

(4) 監視專門機關에 의한 監視

제25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 즉 大統領令이 정하는 감시전문기관에 의한 감시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감시전문기관에 감시를 委託하고, 그 사실을 環境부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제25조의5제1항).

(5) 廢棄物定算書

배출자(제2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를 말한다)는 前年度에 배출한 지정폐기물의 종류·양과 처리상황 등에 관한 정산서를 3월 31일까지 環境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環境부장관은 위의 폐기물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25조의7제1, 2항).

(6) 廢棄物處理業에 관한 事項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環境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環境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제26조제1항). 環境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6조제2항). 또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環

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²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제26조제3항).

한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²⁹⁾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그 영업구역의 제한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한한다(제26조제6항). 또한 위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商號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제26조제7항). 그리고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및 기간³⁰⁾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제26조제8항).

(7)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檢査 및 冠履 등

1) 設置: 폐기물처리시설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28)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하여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수집·운반·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또는 영업구역의 변경,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의 소재지(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 운반차량(임시차량을 제외한다)의 증차,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주요설비의 변경,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허용보관량의 변경(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등이다.
- 29) "필요한 조건"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가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 30) 폐기물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의2).

하여야 하되, 環境부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폐기물소각시설은 이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위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環境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학교·연구기관 등 環境부령이 정하는 자³¹⁾가 環境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며(제1호), 環境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³²⁾(제2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環境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에 있어서 승인을 얻었거나 신고한 사항 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각 變更承認을 얻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

31) 1. 環境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그 부설 연구기관, 3. 국·공립연구기관, 4.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6. 環境친화적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 7. 기타 環境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등이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3 제1항).

32) 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미만인 시설, 2. 고온소각시설·열분해시설·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 기계적 처리시설중 중발·농축·정제 또는 유수 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25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 기계적 처리시설중 압축·파쇄·분쇄·절단·용융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5. 기계적 처리시설중 탈수·건조시설, 증기멸균시설 및 화학적 처리시설, 6. 생물학적 처리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등이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4).

2. 제1호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제30조제1-4항).

2) 檢査: 환경부령이 정하는 廢棄物處理施設³³⁾의 설치를 완료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³⁴⁾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環境部令³⁵⁾이 정하는 기간마다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이내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은 때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위하여 당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 검사의 절차·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제30조의2 제1-4항).

33)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 소각시설, 매립시설, 증기열분쇄시설 등을 말한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

34) 1. 소각시설의 검사기관 : 가. 환경관리공단(폐기물처리업자의 지정폐기물소각시설을 제외한다), 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다.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시험원, 라. 대학·정부출연기관 그밖에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2. 폐기물매립시설의 검사기관 : 가. 환경관리공단, 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다.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3. 증기열분쇄시설의 검사기관 : 가. 국립환경연구원, 나.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다. 환경관리공단, 라. 산업기술시험원, 마.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이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제3항).

35) 1. 소각시설의 경우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 2. 매립시설의 경우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 3. 증기열분쇄시설의 경우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월,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검사일부터 3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제5항).

3) 管理: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汚染物質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여야 한다. 이에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環境部令³⁶⁾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당해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제30조의3).

(8) 廢棄物의 回收措置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수입·판매등을 함에 있어서 그 제조·가공·수입·판매등에 사용되는 재료·용기나 제품 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회수 및 처리가 용이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앞의 재료·용기·제품 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다량으로 제조·가공·수입·판매되어 폐기물이 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위의 고시된 회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회수 및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勸告할 수 있다. 또한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폐기물의 회수 및 적정한 처리등에 필요한

36)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44조의3제1항-4항).

(9) 廢棄物處理에 대한 措置命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
2.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폐기물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제45조).

(10) 廢棄物處理施設の 事後管理 등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을 얻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한 자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 또는 폐쇄한 자는 당해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浸出水處理施設을 設置·稼動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위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적합하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³⁷⁾을 정하여 이의

37)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시정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2조).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47조제1항-3항).

(11) 罰則 및 兩罰規定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제3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한 내에 감시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제3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제1항·제2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4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상의 자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4)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

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제24조제2항 또는 제44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또는 폐기물인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자, 제25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25조의7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정산서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5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형 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자,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이상의 자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法人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廢棄物管理法上の 罰則規定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벌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과한다.

Ⅲ. 環境汚染에 대한 淨化費用責任

1. 序說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汚染原因者 費用負擔原則(Pollution Pay Principle: 이를 PPP라 약칭함)을 천명하고 있다.³⁸⁾

환경오염을 야기한 개인이나 기업은 그 행위로 인한 손해의 填補나 또는 그 事前·事後의 억제나 규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것은 애당초 환경정책이라기보다는 오염정화비용을 분담하고자 하는 경제정책의 하나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³⁹⁾, 각종 환경관련국제회의 및 지역차원의 條約을 통하여 법적 원칙으로 확립되어 왔다. 이와 같이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원칙의 적용범위⁴⁰⁾는 당초에

38) OECD는 PPP란 汚染者가 제1차의 부담자이고, 정부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環境汚染防止와 除去措置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어떤 비용을 어떤 정책수단아래서 어느 정도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39) 1950年 Kapp, K. W. 教授가 그의 저서 The Social Cost of Private Enterpris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에서 환경오염은 기업이 생산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사회에 轉嫁한 것이므로 이 비용은 당연히 그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래, 경제학에 있어서도 환경의 침해를 社會的費用으로 보아 종래의 시장가치 이외에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유효화 된 것이다. 韓貴鉉, 環境法の 基本原理, 세종출판사, 1997, 24면.

40) 오염정화비용책임의 당사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오염을 발생시킨 책임당사자가 분명한 경우와 개인에 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하더라도, 오염발생의 기업활동에 있어서 책임당사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누구에게 淨化責任을 물을 것인가, 또는 책임당사자(주로 기업당사자)가 분명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破産이나 倒産 등으로 인하여 정화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OECD가 상정하고 있던 것보다 확대되어, 축적성오염에 대해서만 아니라, 적지 않은 환경정책의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⁴¹⁾

2. 淨化費用負擔責任

(1) 淨化責任의 範圍

환경오염정화비용의 책임주체가 부담해야 할 책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環境汚染源의 제거조치, 또는 정화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과, 이 비용에 의거하여 기타의 자가 지출한 필요한 대책비, 資源에 기여한 損傷, 破壞, 損失에 대한 손해 및 손상 등의 평가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⁴²⁾ 그리고 인체 또는 건강에 대한 영향조사에 필요한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책임당사자 중 유해물질의 방출 또는 그 위험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는 上記의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외에, 行政命令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제거조치 또는, 회복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때문에 지출된 비용과 일정액의 損害賠償을 청구받을 가능성이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정화작업을 실시하던가, 또는 책임당사자에게 정화작업을 실시시킬 수 있지만, 前者의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책임당사자에 대해서, 後者의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책임당사자가 다른 책임당사자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⁴³⁾

41) 예를 들면 포장폐기물에 관해서 독일, 프랑스, 혹은 최근의 일본에 도입된 제도는 그 실태가 제도의 이념이 있는지 없는지는 별도로 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며, 제조업자 혹은 판매업자에게 소비자가 使用·排出한 뒤의 포장폐기물의 회수와 재이용을 의무로 한다. 또는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PPP의 적용범위가 확장된다고 볼 수 있다.

42) 天然資源에 대한 損害에 대해서는, 査定이 곤란한 것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는 그 기능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여겨진다.

43) 지하수오염의 경우에 지하수를 오염시킨 자는 자기비용으로 오염된 지하수를 직접 정화해야 한다. 환경부는 최근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한 '淨化命令制' 도입

한편 미국의 경우 정화비용책임과 관련된 判例에서 「정화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따라서 환경오염을 야기한 기업에 대하여 承繼會社, 母會事, 貸主(融資者 또는擔保權者를 의미), 또는 企業經營者 등이 책임당사자에 해당하는가 아닌가 하는 격한 논의가 있었다. 미국의 연방의회가 당초에 想定하고 있던 책임당사자의 범위를 法院이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함에 따라, 미국에서는 책임당사자의 해석을 둘러싼 判例의 수는 매우 많다.⁴⁴⁾

(2) 無過失責任(嚴格責任)

정화책임에 대하여 특히 현재의 토양오염이나 지하수오염이 과거의 행위에 의하여 오염이 된 경우에는 그 過失의 유무를 묻지 않고 책임을 부여한다. 즉 無過失責任으로 그 정화에 대한 책임을 遡及적으로 물을 수가 있다.

등을 내용으로 한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1년 하반기 중으로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하수법 제16조의2에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을 규정하고 제16조의 3에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 결과 지하수의 수질이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지하수의 수질을 복원할 수 있는 정화작업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유소와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등 지하수오염 유발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자는 오염방지시설과 지하수 오염여부를 주기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수질관 측정용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지하수 수질측정 결과 수질이 환경부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오염을 유발한 시설 관리자 등은 빠른 시일 안에 오염정화계획을 세워 오염된 지하수를 직접 정화해야 한다. 오염방지시설과 수질관측정을 설치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또 지하수오염을 직접 유발하는 방치 폐공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시장·군수가 책임지고 원상복구 해야한다.

44) United States v. New Castle County, 727 F. Supp. 854(D. Del. 1989)에 있어서 관대한 법해석은 책임당사자의 범위가 공장관리자, 부동산소유기업의 경영진·株主, 사업창업자 등에도 미칠 가능성을 示唆하는 대표적인 판례로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過失責任主義 하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중대한 注意義務違反과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의 違法性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만, 환경손해에서는 그와 같은 立證은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Green Paper는 환경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것이 過失의 증거로 되기 때문에 過失責任은 적어도, 환경법규의 준수에 대한 incentive로서는 유효하지만, 過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過失을 立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의 비용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손해의 회복의 관점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⁴⁵⁾

그리고 「환경에 위험을 미치는 활동에 기인한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대한 조약」 제6조 및 제7조⁴⁶⁾에서는 操業者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규정으로서, 책임인정의 요건으로서의 과실유무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조약의 前文에서는 “환경손해분야에서는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고려해서 엄격책임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 즉, 無過失責任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제정이유로 들고 있다.⁴⁷⁾

한편 네덜란드의 경우 유해물질의 사용, 저장 또는 수송에 의해 발생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또는 토양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청구에 있어서는, 無過失責任(嚴格責任)을 적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民法에 신설하여 적용하고 있다.⁴⁸⁾

45) Green Paper 2.1.1, 4.1.1.

46) COUNCIL OF EUROPE, European Treaties ETS No. 150, <http://www.coe.fr/legaltxt/150e.htm>, pp. 7-8 참조.

47) 홍천용, 앞의 논문 “大氣汚染被害의 私法的 救濟”, 25면 이하 참조.

48) 1994년 3월, 덴마크에서도 환경오염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嚴格責任을 적용한 新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同法에서 도입한 嚴格責任은 네덜란드 민법의 제175조~제178조의 규정 또는 독일의 환경책임법에 비하면 제한적인 것이며, 대형 또는 위험한 플랜트(Plant) 및 그러한 플랜트에 있어서 위험한 활동으로 인한 장래의 오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또 原告는 손해가 플랜트에 의한 오염에 의해서 발생한 것과 그러한 오염이 플랜트 내에서의 위험한 활동에 의해 발생한 것을 立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또 최근에 위험한 물질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無過失責任의 原則을 도입한 判例도 있다. BNA, International Environment Reporter, Vol. 18, No. 3, 1995, p. 106.

요컨대 정화책임의 당사자는 첫째 不可抗力과 戰爭行爲 등의 천재지변, 둘째 제3자에 따른 作爲 또는 不作爲 등으로 인하여 오염물질의 방출 또는 그 우려의 유일한 원인인 경우에 免責을 주장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所有者가 시설의 구입 시에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에 대해서 善意인 경우, 시설의 취득시에 유해물질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충분한 조사를 실시해도 오염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立證하지 못하면 免責을 주장하는 것은 어렵게 된다.⁴⁹⁾

(3) 連帶責任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의 당사자가 數人인 경우에 그 정화책임에 대하여 連帶하여 責任을 져야한다. 그리고 연대책임자 간에는 상호의 정화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정부당국으로부터 정화의 책임주체에 지정된 자는, 같은 형태로 지정을 받은 연대책임자, 또는 지정을 받지 않은 다른 책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 오염유발의 寄與度에 따른 책임의 분담이 문제가 된다. 예컨대 책임당사자는 각자 자기의 分擔比率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단독으로 당해 오염시설정화의 全費用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⁵⁰⁾ 왜냐하면 장기간에 걸친 축적성의 환경오염의 경우에, 그 관련당사자가 다수이고 그들의 정확한 分擔比率을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고, 또 이미 倒産하거나 지불능력이 없는 책임당사자가 있다면 오염정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⁵¹⁾

그러나 특히, 오염에 관한 寄與度가 적은 일부의 당사자가 이론적으로는 정화비용전액지불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비판되고 있다.⁵²⁾

49) 東京海上火災保險株式會社 編, 環境リスクと環境法(美國編), 有斐閣, 1995, 159면 ; 多賀谷晴敏, “包括的環境對處補償責任法”, 世界の環境法, 國際比較環境法センター, 1996, 49-50면.

50) 이론적으로는 각 당사자의 행위와 그 결과의 환경에 대한 손해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으면 連帶責任은 지지 않지만, 사실상 이 분리는 거의 불가능하다.

51) 多賀谷晴敏, 위의 論文, 50면 ; 東京海上火災保險株式會社 編, 위의 책, 160면.

52) 志田 愼太郎, “美國における土壤・地下水汚染の淨化對策”, 環境研究 No.104,

IV. 環境汚染被害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1. 環境汚染被害와 無過失責任

민사상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적으로 債務不履行(민법 제390조)과 不法行爲(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발생한다.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킨 기업은 그 피해에 대한 민사법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러한 환경오염피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성립시킨다. 따라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고(責任能力), 둘째, 책임요소로서 故意 또는 過失이 있어야 하며(過失의 存在 : 過失責任主義), 셋째, 加害行爲가 違法하여야 하며(違法性), 넷째, 加害行爲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因果關係가 있어야 하며(因果關係), 다섯째, 損害가 발생하여야 한다(損害發生).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가해기업의 過失責任主義에 입각하는 한, 과실개념의 緩和에 의하여 피해자구제나 손해의 공평부담을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예측하기 곤란한 환경오염의 위험이나 複合汚染 등에 의한 피해발생 가능성의 증대 등을 생각하면, 과실책임주의를 시정하여 無過失責任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서 環境汚染의 被害에 대한 無過失責任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汚染原因者에게 無過失責任을 지울 때에는 그 원인자에게 故意·過失이 없더라도,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은 환경오염에 대한 행정상의 制裁는 물론 환경오염으로 인한 民事責任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러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의 실정법규정으로서의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와 함께 環境責任의 기본적인 책임유형으로서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

1996, 62면.

으로서 피해자의 權利救濟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⁵³⁾

그러나 이러한 무과실책임의 원칙은 민사상의 不法行爲責任의 성립요건 중의 하나인 過失의 立證이라는 문제가 환경오염의 특성상 매우 어려운 것임으로, 과실의 입증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이 책임은 행정상의 책임이라고 보다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민사법상의 책임에 대한 特別法的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⁵⁴⁾

2. 連帶責任

환경오염피해는 폐기물처리, 유해물질의 방출, 증금속의 누출 등과 같이 單一企業의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날과 같이 대규모적인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피해는 일반적으로

53) 이에 대한 비판의 견해가 있다. 柳至泰 교수님은 “환경정책기본법의 일반적인 성격상 우리의 경우는 그 규정내용들이 실천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책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를 기초로 하는 개별 환경법의 방향을 규율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同法은 政策選言的인 의미를 갖는 것이며, 바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同法 제31조가 바로 복잡한 환경책임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며, 이러한 法全體의 성격적인 문제점을 제외하고도 당해 條文은 그 규정의 체계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제31조 제1항은 기본전제로서 이른바 無過失危險責任에 기초하고 있으나 제7조는 汚染原因者의 費用負擔原則을 규정하면서 그 기본에 있어서 過失責任을 전제로 하는 바, 兩條文이 여하히 조화될 수 있는 지가 의문시되며, 또한 환경책임의 實效性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도에 관한 규정들도 불충분하여 현실적으로 그 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들도 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柳至泰, “環境責任法研究”, 公法研究 제22집 제3호, 韓國公法學會, 1994. 6, 349~350면.

54)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는 “독일의 環境責任法과 같은 정교한立法에 비하면 지나치게 간략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현행제도의 기본적인 접근은 엄격한 私法的 처리에 의한 責任 추궁보다는 調整制度를 통한 원만하고 互惠인 해결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李相敦, “環境政策基本法에 대한 考察”, 公法研究 제21집, 1993, 169면.

複數企業의 사업활동이 원인으로 되어 발생하는, 소위 複合汚染의 被害⁵⁵⁾가 오히려 통상적이라 할 수 있다. 1970년 대 후반 울산의 온산공단의 환경오염피해는 複數의 공장에서 유해가스 및 분진을 배출하여 온산면의 大氣 및 水質汚染을 초래하여, 이 지역 각 부락에서 1년에 수백명씩 피부병, 호흡기질환 및 눈병 등의 만성적인 신체건강상의 장애를 일으키고, 그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의 土壤 및 地下水汚染을 야기한 경우⁵⁶⁾ 등은, 각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서로 重合하고 集積해서 大氣, 水質 및 土壤·地下水를 오염시켜, 그것에 의하여 호흡기질환 등의 疾病原因을 이루게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複合汚染의 경우에 피해자는 각 공장의 손해발생에 대한 原因度를 확인하여, 각각의 기여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각각의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복합오염에 관하여 각 기업이 손해발생에 대한 寄與度를 확인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있어서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複合汚染에 대한 救濟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불법행위의 규정을 넓게 인정하는 것이 요청됨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2항에서 사업장 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 등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가 連帶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汚染原因者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連帶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민법 제760조의 共同不法行爲規定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救濟를 인정하고 있다.

55) 複數의 기업에서 특정하천에 배출한 廢水가 水質을 오염시켜 하류에서 河川水를 灌溉 用水로 사용한 농장물에 피해를 주거나, 임해공단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업의 工場廢水가 인근 해산물 養殖場에 피해를 주었다던가, 공업단지에 밀집한 여러 공장에서 배출된 有害物質이 포함된 매연 등이 大氣汚染을 초래하여 인근주민에게 호흡기질환을 야기한 경우 등이다.

56) 大判 1991. 7. 26. 判決, 90다카26607. 26614.

V. 結 語

21세기는 環境과 情報의 시대라고 한다. 環境오염으로 인한 環境과피는 인류를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도록 하기에 環境문제의 해결이 최우선의 당면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環境오염은 기업의 생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최근에는 環境오염에 따른 損失이 기업의 이미지 손상을 넘어 汚染淨化費用의 천문학적 증가로 인하여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대한 경영리스크(위험)로 바뀌어 가고 있다. 기업들의 제품생산과 공장가동에서 발생하는 環境오염이 가져오는 다양한 형태의 손실이 바로 環境리스크다. 이에 따라 “環境리스크”를 막기 위한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대책 마련이 한창인 실정이다.⁵⁷⁾

57) 일본 대형은행들은 2000년 3월 環境문제가 가져올 경영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연구회를 발족시켰다. 이들은 環境리스크 대응에 능장부리는 기업에 대해 높은 금리를 물리고, 최악의 경우 대출을 회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1998년부터 부동산매매시 環境오염평가를 해온 후지쓰는 올해 이를 명문화하고, 소유기업에게 토지의 사용이력과 오염조사자료를 요구한다. 기업들도 자구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데, 도시바는 지난해부터 ‘環境회계’를 따로 작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토양오염 정화비용에 150억원을 쏟아 부었다. 한발 앞선 미국에선 1980년에 오염발생의 기업에 대해 엄격책임을 묻는 슈퍼금융법을 제정했으며, 기업들은 공장설립 단계부터 環境컨설팅을 받는다. 기업마다 건강, 안전, 環境담당 임원을 별도로 두고 있고, 기업인수합병이나 은행대출 때 環境오염을 점검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선 패슨즈와 같이 기업부동산의 토양정화·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등장했고, 일본에선 미쓰이물산과 미쓰이조선이 최근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지난 2000년 3월 산하 공장에서 다이옥신 유출사고가 발생한 일본의 한 조각로 건설업체는 영업이 매우 힘들게 됐다. 이 사고로 지방자치단체 環境관련 시설의 입찰에 나설 수 없어, 앞으로 3년 동안 1200억원 정도의 매출과 1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이 회사는 추정했다. 아울러 오염된 토양이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170억원 정도를 써야 하고, 어민들에 대한 보상과 부근 주민의 건강진단 비용 등도 만만찮다. 環境관련 업체로서 이미지 손실 또한 막대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돈 빌리기도 몇 배나 힘들어졌다. 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공장 내부의 토양과 지하수오염에 따른 손실이다. 오염으로 기업의 자산가치가 크

현행법상의 환경오염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각종의 環境行政規制에 대한 책임과 오염원인자로서의 淨化 및 淨化費用責任을 부담한다.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및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한 損害賠償責任도 지게 된다. 이렇듯 환경오염의 발생은 여러 방면에서의 법적 책임을 수반하며, 또한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측면에서도 오염기업의 책임을 무겁게 부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기업은 환경친화적인 생산활동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각종의 환경오염에 대한 法的 義務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환경오염의 예방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논문주제검색키워드 : 기업의 환경오염 책임, 기업 환경오염 정화, 기업 환경오염 정화비용, 환경오염 원인자 무과실책임, 연대책임, 환경리스크

게 줄어들고, 정화에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일본지반환경정화추진협회에 따르면 일본에서 오염판정이 예상되는 기업소유토지는 44만곳에 이르며, 정화비용은 13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환경오염으로 땅값이 반토막 이하로 줄어드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정화비용까지 감안하면 땅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극단적인 사례도 있다. 또 기업들이 토지를 사고 팔 때 토양오염에 따른 손실산정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는 일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환경에 관심을 많이 두는 기업에 투자하는 '에코펀드'는 일반 주식보다 나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한겨레신문, 2000. 10. 31, (외신)기획, 연재기사, 25면 참조.

<Abstract>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Enterprise for
the Environmental Pollution

Cho, Eun Rae

In a production process of an enterprise, the harmful pollutants have contaminated natural environments, such as air, water, soil or sea. Though the enterprises have largely contributed to an economic development they are also responsible for most of the environmental destruction.

The legal responsibility should be burdened to the enterprises which have caused environmental pollution. There are the polluter pay principal, a purification obligation, the liability of purification cost and a compensation for damages by contamination action in the legal responsibilities of the enterprises. It is one of the best ways in a pollution prevention for the enterprises to exactly grasp the legal responsibilities for pollutions. Therefore the enterprises should observe the laws related to all sorts of pollutions.